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아래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 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철저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0)하여 주십시오.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하십시오.

확 인 사 항		인	
		아니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가능 과제 수 제한기준 준수 여부 ▶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동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가 5개 이하이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하인가?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참조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여부			
 금번 신청과제 접수 마감일까지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및 연구자가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는가? 	()	()	
(참여제한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는 '예'에 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준수 여부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 이내인가? 단,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인건비계상률 최대 130%까지 가능	()	()	
□ 의무사항 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고 있는가? 	()	()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이 없는가? 단,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 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 (중복되지 않으면 '예'에 표기)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상태인가?	()	()
▶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
▶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 (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 (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	()
▶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상태인가?	()	()
본 신청인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에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신청인(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 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귀하